

의안번호	2207895
의 퇴 인	김건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4.
추계번호	25F064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3,085억원, 2028년 3,267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6,352억원(연평균 3,1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기업규모별 해당 분야의 R&D 지출 및 공제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 인상 등(안 제10조제1항)	-3,085	-3,267	-6,352	-3,17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40 → 50, 중견 및 대기업 30 → 40 ※ 단, 중견기업 전환후 3년 이내인 기업은 35 → 45 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 -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9개로 확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단,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~2028년간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 및 R&D 비용에 대한 법인세 등은 2027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 - 또한, 현행 국가전략기술 R&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간 발생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를 인상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국가전략기술의 기업규모별 공제율 인상시 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실적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이 비례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
 - 향후 R&D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3년 이내 기업은 통계청의 「기업 통계등록부」의 제조업 기준 중견기업 전체 대비 전환 3년 이내의 기업 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R&D 지출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의 범위와 해당 분야의 R&D 지출, 세액공제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 - 국가전략기술 R&D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R&D 비용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 - ※ ‘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’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 ¹⁾	8(15~20) ²⁾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	20(25)	30
국가전략기술		30	30(35)	40

주: 1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매출액 대비 R&D 비중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포함하지 않은 공제율임

1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 로 계산함

2) ()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3년(일반기술은 5년)간 적용되는 세액공제율

□ (공제실적) 2023년 R&D 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4조 5,221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한편, R&D 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4조 6,302억원, 2024년(잠정치)은 3조 588억원 수준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852	2,886	6,023	23,76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66	255	8,971	9,492
국가전략기술 R&D	32	9	11,927	11,968
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잠정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기업규모별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국가전략기술>	2027	2028
중소기업	25	26
중견기업	7	8
대기업	9,229	9,773
계	9,261	9,807
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(t-1)	6.3	5.9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) 기업규모별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공제율 인상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기업규모별로 현행 및 개정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40 → 50, 중견 및 대기업 30 → 40
 - ※ 단, 중견기업 전환후 3년 이내인 기업은 35 → 45
 - 중견기업의 경우, 통계청의 「기업통계등록부」에 따른 제조업 기준 중견기업 전환 3년 이내의 기업 비중(6.0%)을 적용하여, 일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전환후 3년 이내 기업을 구분한 후 공제율 인상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

[표 5]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
중소기업	현행(A)	25	26
	개정안(B=A×50/40)	31	33
	차이(C=A-B)	-6	-7
중견기업	현행(D)	7	7
	개정안(E=D×40/30)	9	9
	차이(F=D-E)	-2	-2
중견기업 (전환 후 3년 이내)	현행(G)	0.5	0.5
	개정안(H=G×45/35)	0.6	0.6
	차이(I=G-H)	-0.1	-0.1
대기업	현행(J)	9,229	9,773
	개정안(K=J×40/30)	12,305	13,031
	차이(L=J-K)	-3,076	-3,258
차이 계(C+F+I+L)		-3,085	-3,267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3,085억원, 2028년 3,267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6,352억원(연평균 3,1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,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기업규모별 해당 분야의 R&D 지출 및 공제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 인상 등(안 제10조제1항)	-3,085	-3,267	-6,352	-3,176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